

공 보

제688호 2019. 3. 13.(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2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9-25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307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7

거창군 공고 제2019-310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8

거창군 공고 제2019-311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2

거창군 공고 제2019-312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0

거창군 공고 제2019-313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0

거창군 공고 제2019-31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96

거창군 공고 제2019-316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99

거창군 공고 제2019-326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09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5

거창군 공고 제2019-327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7

거창군 공고 제2019-32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9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119

거창군 공고 제2019-332호 공시송달 공고 122

거창군 공고 제2019-337호 「고제 용초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23

거창군 공고 제2019-343호 「군도12호선(엄대마을)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28

거창군 공고 제2019-346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33

회 관									
--------	--	--	--	--	--	--	--	--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14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5-5일원	5,000	증)208	5,208	거고43호 (08.9.25)	경미한 변경

2)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주차장	·구역 변경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5-5일원 - 면적 : 5,000m ² →5,208m ² (증)208m ²)	· 거창군 향노화 힐링랜드 조성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반영한 군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거창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

다. 사업규모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5,000.0	4,634.0	1,446.61	1,446.61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5,208.0	4,810.0	1,446.61	1,446.6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산림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마. 사업기간

- 당초 : 2018. 8. 23. ~ 2018. 12. 31
- 변경 : 2018. 8. 23. ~ 2019. 03. 31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실음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026	4,634					
				7,026	4,810					
1	가조면 수월리	산15-5	도	1,423	1,259		거창군			
				1,423	1,376					
2	가조면 수월리	산19-1	도	889	830		거창군			
				889	889					
3	가조면 수월리	산19-2	임	829	171		거창군			
				829	171					
4	가조면 수월리	산19-4	임	747	747		거창군			
				747	747					
5	가조면 수월리	산199-1	차	706	685		거창군			
				706	685					
6	가조면 수월리	산11-1	도	2,106	837		거창군			
				2,106	837					
7	가조면 수월리	산11-2	임	326	105	가조면 사병리 334	김종훈			
				326	105		거창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223-47 등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산10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915	2009-04-01	2019-03-13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23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223-47	2009-04-01	2019-03-13	철마산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중복 재기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주 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 전 화 : 055-940-3202
 - 팩 스 : 055-940-3619
 - 이메일 : 71pigs@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제정) 1999.01.15 조례 제1494호

(일부개정) 1999.09.11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01.03.15 조례 제1613호

(일부개정) 2006.09.26 조례 제18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0.11.30 조례 제1996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1호

(일부개정) 2017.11.29 조례 제2420호 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1.29.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군수는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거창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2015. 12. 30)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3. 15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6호, 2010.11.3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5.12.30.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금액별로 제작·공급하여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PP포대) 50ℓ를 추가하고자 함
- 상위 조례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금액별로 제작·공급하여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등 정비
(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행 규정 신설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 규정 신설
- 종량제봉투(PP포대) 사양 및 판매가격 신설(안 별표1, 안 별표4)

- 건설폐기물매립장 폐쇄에 따른 규정 등 정비(안 제21조제1항4호)
 -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 및 별표5의2 삭제
- 제2조제3호·4호, 제7조제1항, 제15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조제목·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조제목·제1항·제1항1호·제2항, 제19조 조제목·제2항, 제21조3호, 제22조 제1항, 제25조제1항3호·4호, 별표1·2·3·4·5의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정비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절차 정비(안 제6조제1항)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5호)
-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 정비(안 제10조제1항)
-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제4항, 제6조 조제목·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2호, 별지5·5-2·6·7·8·9·10·11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3. 8. ~ 2019. 3. 29.(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03, FAX :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로 하고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대행한다”로 하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를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로 “봉투공급을”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쓰레기 판매소 지정”을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봉투의”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한다.

제21조제1항4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봉투판매 가격의 별표4의2와 같다”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4의2 및 별표7과 같다”로 한다.

제2조제3호4호, 제7조제1항, 제15조 조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조제목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조제목제1항제1호제2항, 제19조 조제목제2항, 제21조3호,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3호4호, 별표1·2·3·4·5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정비한다.

별표 1·2·3·4·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생략)</p> <p>3.“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쓰레기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6.7.(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현행과 같음)</p> <p>3.“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u>종량제봉투</u>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5,6.7.(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법15조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쓰레기 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⑦(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법15조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u>종량제봉투</u>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⑦(현행과 같음)</p>
<p>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①<u>쓰레기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p>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①<u>종량제 봉투</u>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p> <p>③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p>	<p>②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p> <p>③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p>
<p>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①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생략)</p> <p>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 사양은 별표 2와 같다.</p> <p>⑥쓰레기 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p>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양은 별표 2와 같다.</p> <p>⑥종량제봉투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p>
<p>제17조(판매소의 신고)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17조(판매소의 신고)①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쓰레기 봉투</u>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u>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u></p> <p>1.~2.(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u>쓰레기 판매소 지정</u>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9조(<u>쓰레기 봉투의 매수</u>)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봉투의</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쓰레기봉투</u>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p>	<p>제18조(<u>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u>)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u>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u>는 <u>종량제 봉투</u>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u>대행한다.</u> 이 경우 <u>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u>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u>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9조(<u>종량제 봉투의 매수</u>)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u>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u>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u>종량제봉투</u>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2 (생략)</p> <p>3.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u>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p> <p>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u>봉투판매</u> 가격은 <u>별표4의2와</u>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2(현행과 같음)</p> <p>3.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중량제봉투</u>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삭 제></p> <p>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u>중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u> 가격은 <u>별표 4의2 및 별표7과</u>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쓰레기 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u>중량제 봉투</u>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5조(보고, 검사등)</p> <p>①(생략)</p> <p>1.~2.(생략)</p> <p>3. <u>쓰레기 봉투</u> 제작업자</p> <p>4. <u>쓰레기 봉투</u> 판매자</p>	<p>제25조(보고, 검사등)</p> <p>①(생략)</p> <p>1.~2.(생략)</p> <p>3. <u>쓰레기 봉투</u> 제작업자</p> <p>4. <u>쓰레기 봉투</u> 판매자</p>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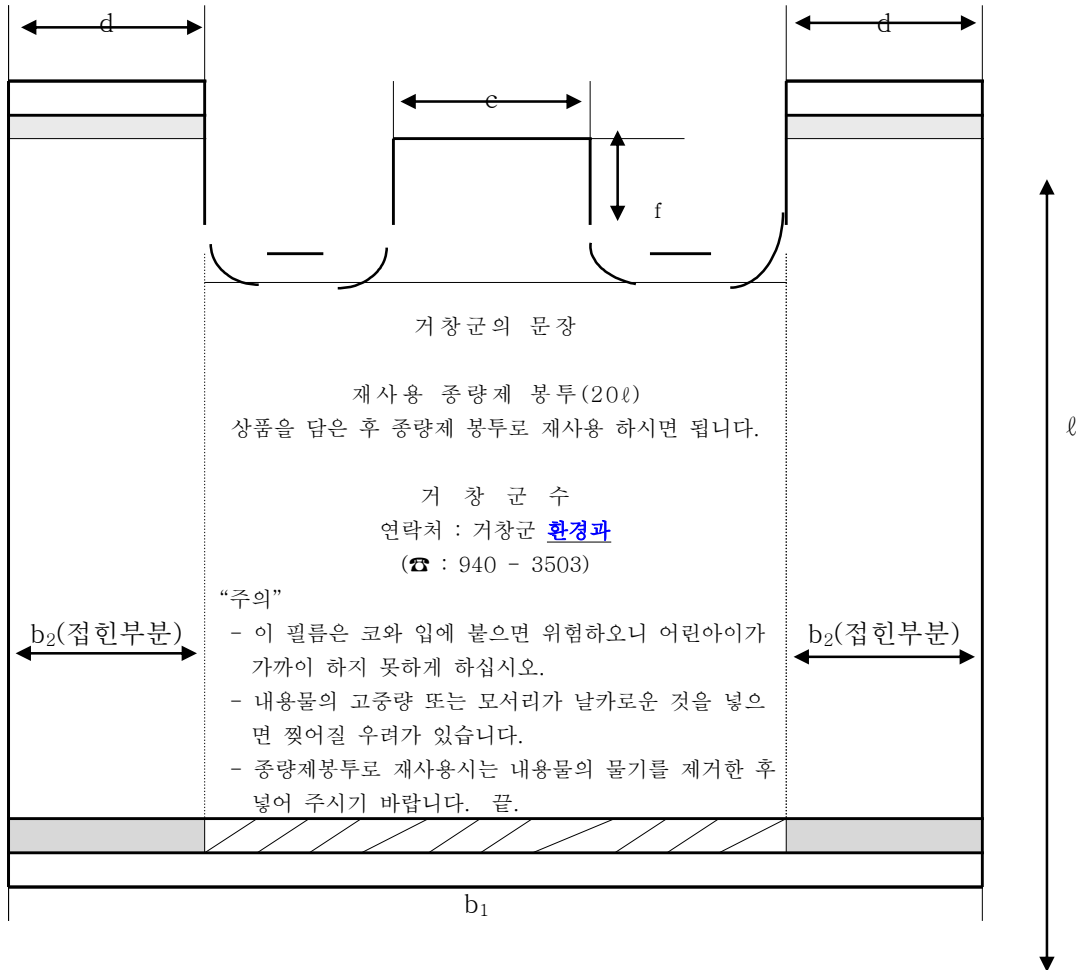
봉투의 용량(리터)	용도
3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5	일반용(가정, 사업장) <u>음식물전용</u>
1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2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50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u>재사용</u>
100	일반용(가정, 사업장)
<u>50(PP)</u>	<u>일반용(가정, 사업장)</u>
100(PP)	일반용(가정, 사업장)

【별표 2】

중량제봉투의 사양

□ 재사용봉투

1. 봉투 형태



비고 1. ℓ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너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너비 $b_1 + 2b_2$ 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너비,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너비, c 는 묶는선 폭, d 는 손잡이끈 폭, f 는 묶는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 **음식물전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거창군 로고)		
중량제봉투 (Oℓ) -음식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2. 과일껍질, 채소찌꺼기, 음식찌꺼기등 음식물 쓰레기의 물을 꼭 짜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거 창 군 수		
연락처 : 거창군 환경과 연락처(940-3503)		
이 봉투는 공업진흥청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3]

중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 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떨어져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건설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 (DIC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4]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록구,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2)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text{쓰레기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times 0.09$ 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용 량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u>비 고</u>
	<u>공 급 가 격</u>	<u>판 매 이 익</u>	<u>판 매 가 격</u>	
3ℓ	45	5	50	- 1매당 가격 - 판매이익 9%
5ℓ	91	9	100	
10ℓ	182	18	200	
20ℓ	364	36	400	
50ℓ	819	81	900	
100ℓ	1,638	162	1,800	
<u>50ℓ</u> <u>(p.p)</u>	<u>964</u>	<u>96</u>	<u>1,060</u>	
100ℓ (p.p)	1,929	191	2,120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중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 원/개당)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 전 제 품 류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64㎡이상	10,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가 구 류	장농	90cm이상 1쪽	15,000
		90cm이상 1/2쪽	8,000
		90cm미만 1쪽	10,000
		90cm이상 1/2쪽	5,000
	서랍장식장	1대당	5,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2,000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이하	4,000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응접테이블	1대당	4,000	
응접세트	장의자	5,000	
	의자	2,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인용프레임	5,000	
	2인용	15,000	
	2인용매트리스	8,000	
2인용프레임	7,000		
전축케이스	1개당	3,000	

【별표 7】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가격 (제21조제2항 관련)

규격별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1,000원권	910원	1,000원	- 1매당 가격 - 판매이익 9%
2,000원권	1,820원	2,000원	
3,000원권	2,730원	3,000원	
4,000원권	3,640원	4,000원	
5,000원권	4,550원	5,000원	
10,000원권	9,100원	10,000원	

거창군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쓰레기 봉투는 규격에 따라”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 및 금액별로”로 한다.

제9조제5호를 신설한다.

5. 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외 다른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4항을 신설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제13조2호 중 “쓰레기 봉투의 보관 및 판매소 공급”을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보관 및 판매소 공급”으로 한다.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제4항, 제6조 조제목·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2호, 별지5·5-2·6·7·8·9·10·11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정비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5·5-2·6·7·8·9·10·1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u>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고</u>)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u>쓰레기 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u>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신고</u>)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u>종량제봉투 판매소</u>(이하 “판매소”라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p>
<p>제5조(<u>판매소의 신고 수리등</u>) ①.~③.(생략) ④군수는 <u>쓰레기 봉투</u>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선정을 지시할 수 있다.</p>	<p>제5조(<u>판매소의 신고 수리등</u>) ①.~③.(현행과 같음) ④군수는 <u>종량제봉투</u>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선정을 지시할 수 있다.</p>
<p>제6조(<u>쓰레기 봉투의 공급절차</u>) ①<u>쓰레기 봉투는 규격에 따라 10매부터 50매까지의 단위로 포장하여</u> 군수가 공급한다.</p>	<p>제6조(<u>종량제봉투의 공급절차</u>) ①<u>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규격 및 금액별로 10매부터 50매까지의 단위로 포장하여</u> 군수가 공급한다</p>
<p>제9조(<u>봉투판매자 준수사항</u>)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로 신고수리된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p>	<p>제9조(<u>봉투판매자 준수사항</u>)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로 신고수리된 판매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현행과 같음) 5. <u>판매자는 군수가 공급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외 다른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u></p>
<p>제10조(<u>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u>) ①.~③.(생략)</p>	<p>제10조(<u>대형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장 처리 수수료 납부</u>) ①.~③.(현행과 같음) ④<u>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음·면 위임)조례 제26조에 따라 음·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쓰레기 봉투의 보관 및 판매소 공급</p> <p>3.~5(생략)</p>	<p>제13조(음·면 위임)조례 제26조에 따라 음·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중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보관 및 판매소 공급</p> <p>3.~5(현행과 같음)</p>

[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10조제4항 관련)

스티커	내원바탕색	비 고
1,000원권	연녹색	
2,000원권	분홍색	
3,000원권	하늘색	
4,000원권	주황색	
5,000원권	보라색	
10,000원권	빨강색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중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 및 대장 :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중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 및 대장 :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6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u>증량제병투 판매소 조사서(제5조관련)</u></p>			결	담당자	주사	과장
			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업내용			
영업소 위 치						
현지 상황	판매대상 지역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가옥구분 및 소유구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자가, 차가 사용			
	영업소 거주 유무		유무			
인 근 판매소와 거 리	동	서	남	북	비 고	
	m	m	m	m		
조사자 총 합 의 견						
조 사 연월일			조 사 자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증(제5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의 위 치			
판매소 구 분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u>종량제봉투</u> 판매소로 신고·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뒷면>

제 호		
변 경 사 항		
신고연월일	상 호 및 명 의	확 인 (인)

◆ 영업상 유의사항 ◆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 판매소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계약서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종량제봉투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 “갑”이 “을”에게 종량제봉투를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매”란 “을”이 군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급 및 판매) ① “갑”은 “을”에게 판매능력의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봉투를 수요자에게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 수량부족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종량제봉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한다.

④ 쓰레기 배출자가 이어나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 ①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여 지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을”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결제) “을”은 신청한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을 쓰레기 봉투 인수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상 준수사항) ① “을”은 종량제봉투 보관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 및 종량제봉투 판매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관리업무 및 사무처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이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부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만료일부부터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이 계약 기간을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변경)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이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관계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을”에게 최고하고 최고 후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계약 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3. “을”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4. 3개월 평균 판매량이 월 300매 이하일 때 (자연마을 단위 제외)
5. “을”이 고의적으로 “갑”의 활동을 방해하였을 때

제11조(장부비치)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갑” :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2. “을” :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2조(계약의 해설) 이 계약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그밖의 사항) 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은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거 창 군 수 (인)

을 : 거창군 읍(면)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중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 및 대장 :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판 매 소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신고서(제8조관련)	처 리 기 간 즉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사 유				
휴업일경우의 휴업기간				
<p>「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p> <p>판매소를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판매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고증(폐업의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목적	1.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 관련 업무 2. 중량제봉투 판매소 신청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폐기물 반입·배출 등 관련 업무
2. 개인정보 수집항목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신청서 및 대장 : 2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항목별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동의하지 않음)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div>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2015.12.30.)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4.10. 2015.12.30.)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0.)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2015.12.30.)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8. 9. 호이동 및 개정2015.12.3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4.02.10)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2015.12.30.)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015.12.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1. 9)

③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4.10)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12.30.)

⑤ (삭제 2004.02.10)

⑥ (삭제 2004.02.10)

⑦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

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9. 2015.12.30.)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2015.12.30.)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8.09.조례 제1626호)

제9조 삭제(2004.02.10)

제10조 삭제(2004.02.10)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 1. 9)(항 이동 2013.4.10)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5.12.30.)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2015.12.30.)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2.30.)

제3장 삭제(2015.12.30.)

제13조 삭제(2015.12.30.)

제14조 (삭제 2000. 9. 20)

제4장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④ (삭제 2004.02.10)

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015.12.30.)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2015.12.30.)

⑥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17조(판매소의 신고) (개정 1999. 7. 15)

-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7. 15)
-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 2015.12.30.)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015.12.30.)
 -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2015.12.30.)
 -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015.12.30.)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015.12.30.)
- ③ (삭제 2004.02.10)
 - ④ (삭제 2004.02.10)

제19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2015.12.30.)

제20조 삭제(1999.07.15)

제5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1. 9)(개정 2013.4.10. 2015.12.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1. 8. 9)
-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 4 제1호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별표4의2와 같다.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2015.12.30.)
- ③ (삭제 2004.02.10)
- ④ (삭제 2004.02.10)

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5. 5. 25)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4.10)

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5.12.30.)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제6장 장려금 등(장 신설 2013.4.10)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 (보고, 검사등) (조 이동 2013.4.10)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또는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
3.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
4. 쓰레기 봉투 판매자
5. 청소대행업자
6. (삭제 2004.02.10)
7. (삭제 2004.02.10)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2015.12.30.)

제26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 (조 이동 2013.4.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조 이동 2013.4.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9 - 311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2014. 5. 28.)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위배 소지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함(안 제6조제2항)

1) 삭제 :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2)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구성해야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 전화번호 : 055)940-3713
- FAX : 055)940-3349

- 붙임 1.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 시민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 시민단체 대표 등 4. 도시가스사업자의 소속 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⑥ <u>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u><삭 제></u></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책과제의 추진(안 제4조 ~ 제5조)
 -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자치분권운동 군민참여 확대
-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7조 ~ 제9조)
 - 구성
 -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군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함
-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안 제12조 ~ 제13조)
- 경비의 지원 등(안 제1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11. ~ 2019. 3.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 거창군청 행정과)

- 우 편 :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행정과장)
- 팩 스 : 055-940-3169
- E-mail : dlwhdthq@korea.kr
- 전 화 : 055-940-3182
- 직접방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군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및 군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치분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501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22조의2(지역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별 협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1.]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2.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거창지소장을 포함

3.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용어 및 정의 추가, 기존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 제2항)
- 나.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거창지소장을 포함(안 제7조제3항)
- 다.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 분기별 1회 개최 ⇒ 반기별 1회 개최

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6조제1항)

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는 국가에 등록된 지원법인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군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관련 조항 삭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자체를 통한 장례비 등 범죄피해 지원 조항 삭제(조례 제17조, 제18조 삭제)

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관계기관끼리 협조해야한다는 내용 추가(안 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11. ~ 2019. 3.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 거창군청 행정과)

- 우 편 :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행정과장)

- 팩 스 : 055-940-3169

- E-mail : dlwhdthq@korea.kr

- 전 화 : 055-940-3182

- 직접방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_____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수정안)	비 고
	찬성	반대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7.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창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거창지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없는 경우 부의장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호이동 2015.4.29.)</p> <p>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015.7.22)</p> <p>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15.7.22.)</p> <p>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2. “아동”이란 거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p> <p>3. “청소년”이란 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p> <p>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p> <p>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p> <p>6. “민간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p> <p>7.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거창</p>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4.29.)
3. 거창소방서장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의회 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창소방서장, 창원보호관찰소거창지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9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는 경우 부의장이 -----
-----.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반기별 1회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

----- 실무협의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1

항제6호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이동 2015.4.29.)

1. ~ 4. <신 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 2014.12.31.항이동 2015.4.29.)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사업
3.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조 전부개정 2015.7.22.)

<삭 제>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제목 등 개정 2015.7.22.)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7.22.)

<삭 제>

<신 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6. (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IC 회전교차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7.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IC 회전교차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10-2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35.0m. B=8.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10-2번지의 5필지
- 나.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다.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편입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6,904	572					
1	거창읍 대평리	1347-13	창	980	59		거창군			
2	"	810-11	답	602	158		거창군			
3	"	1353-11	답	2	2		거창군			
4	"	810-2	답	448	13	거창읍 정장리 56	이동구			
5	"	1347	창	33,819	105		거창군			
6	"	1353	답	1,053	23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9-14	정익치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 법규명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관광객 유치지원 경쟁에서 지리적 약점 보완

3. 주요내용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관광객 유치지원 기준 변경(안 제4조)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관광진흥 유치지원금 지원대상 근거 마련(안 제2조)
 - 관광진흥 유치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급시기 근거 마련(안 제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9. 3. 11. ~ 2019. 3.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제출처 : 거창군청 행정과)

- 우 편 :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문화관광과장)

- 팩 스 : 055-940-3409

- E-mail : mo869@korea.kr

- 전 화 : 055-940-3422

- 직접방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1.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였거나, 관광지과 음식점 중 각 1개소 이상 당일 이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생략)</p> <p>1. <u>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u></p>	<p>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1. <u>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1박이상 투숙하였거나, 관광지와 음식점 중 각 1개소 이상을 당일 이용한 경우</u></p>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 대상) 1. 군 관광이 당일 또는 1박 이상 포함된 관광상품으로 관광
객을 군에 유치한 여행업체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신청) ①여행 7일전에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서
식)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기준 및 지급 시기) ①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대상 및 규모)	1. <u>군 관광이 1박 이상 포함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군에 유치한 여행업체</u> 2. <u>내국인 관광객이 1회 2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1회 10명 이상의 규모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촌 체험마을 내 숙박시설에 유료 투숙하도록 한 여행업체</u>	제2조(지원 대상)	1. <u>군 관광이 당일 또는 1박 이상 포함된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군에 유치한 여행업체</u> <삭 제>	
제3조(지원 신청)	① <u>여행 7일전에 관내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객 방문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조(지원 신청)	① <u>여행 7일전에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4조(지원 기준 및 시기)	① <u>보상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8,000원</u> 2. <u>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10,000원</u> 3. <u>수학 여행단을 유치한 경우 1명 1박당 2,000원</u> ③ <u>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에 지급한다.</u>	제4조(지원 기준 및 지급시기)	① <u>보상금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u> <삭 제>	③ <u>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u>

[별표]

보상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금액(단위:원)		지원조건(모두충족)	
			당일	1박	당일	1박
일반 관광	내국인	20명 이상	5,000	10,000	·관광지와 음식점 중 각 1개소 이 상 이용	· 숙박시설 1박 이상 투숙
	외국인	10명 이상	5,000	10,000		
	수학 여행단	40명 이상	3,000	5,000		

[별지 제1호서식]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휴대폰)		FAX :
<input type="checkbox"/> 방문계획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수학여행단체 <input type="checkbox"/>)			
방문기간	20 . . . ~ . . . (박 일)		
인원	총 명 【내국인: , 외국인: 】		
관광코스			
숙박예정업소명			
식사예정업소명			
방문계획일정	붙임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 여행사(단체)의 단체관광객 거창 방문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 대표자 : (직인) </p> <p>거창군수 귀하</p>			
첨부서류	1. 여행 일정표 (별지 제1-1호서식)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여 행 일 정 표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분)			
첫 째 날					
둘 째 날					

[별지 제3호서식]

관광객 숙박 확인서

알선 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연락처	(휴대폰)		FAX :

알선 내역

기간	숙박인원(명)		국적	인솔자		비고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소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5호서식]

관광지 방문 증빙 사진	
관광지명	

- ※ 안내판, 이정표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 2개소 이상 촬영
- ※ 관광객 유치 지원금은 사진 내 촬영된 인원수로 인정

관계법령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 및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숙박업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12.28)

부칙(제정 2013.01.09.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12.28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09호선 외1)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73호('80.07.1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09호선, 2-210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13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09호선)	웅양	노현	소로	2	209	174	8	1,601	웅양면 노현리 115-2	웅양면 노현리 104-1 1	경고173 호 (‘80.07.14)	
	도시계획도로 (소로2-210호선)	웅양	노현	소로	2	210	107	8	752	웅양면 노현리 104-7 7	웅양면 노현리 102-3	경고173 호 (‘80.07.1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웅양면소재지 일원(소로2-209호선 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웅양면			22,744	2,353					
1	노현리	1404	도	5747	94		건설부			
2	노현리	115 - 2	답	1184	16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78번길 17	김성만			
3	노현리	116 - 2	도	1904	15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78번길 17	김성만			
4	노현리	117 - 3	구	1827	75	주상면 도평리 572	북부농업협 동조합			
5	노현리	117 - 2	답	684	166	주상면 도평리 572	북부농업협 동조합			
6	노현리	102	답	2825	467	경남 거창군 주상면 새터길45-42	김동관			
7	노현리	101 - 2	답	1060	35	213	백형진			
8	노현리	1406	답	2076	65		농수산부			

9	노현리	104 - 84	답	200	200		거창군			
10	노현리	104 - 79	답	97	97	104-10	김기상			
11	노현리	104 - 19	답	946	150		경상남도			
12	노현리	104 - 11	도	211	87	104	이인득			
13	노현리	104 - 12	도	5	4	104	이인득			
14	노현리	104 - 85	도	631	29	대구시 달서구 조암남로123, 104동902호 (대천동,월배태영대시양)	옥화순			
15	노현리	103	답	889	315	213	백형진			
16	노현리	107	답	1359	41	189	백형진			
17	노현리	104 - 18	답	395	124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5-2 삼화연립 207	김형택			
18	노현리	104 - 32	답	325	2	104-32	이판술			
19	노현리	104 - 74	답	18	1		거창군			
20	노현리	104 - 68	답	181	22		거창군			
21	노현리	104 - 77	답	82	23		거창군			
22	노현리	104 - 67	답	15	5		거창군			
23	노현리	104 - 61	답	45	3		경상남도			
24	노현리	104 - 51	답	10	10		거창군			
25	노현리	104 - 21	답	28	22		거창군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9-21호('19.02.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3-26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13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261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261	130	6	1,112	거창읍 송정리 1057	거창읍 송정리 566-6	거고21호('19.02.2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6,748	1,112					
1	거창읍 송정리	1057	도	2,931	3		국(건설부)			
2	"	1061-11	구	852	155		국(농림수산부)			
3	"	576-2	전	516	3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3	이홍월			
4	"	505-2	목	1,772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당	거창축협	
5	"	569-1	대	435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당	신원농협	
6	"	570	답	16	16	거창읍 송정리 564-4	김점술	근저당	신원농협	

7	"	569-4	대	435	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 당	신원 농협	
8	"	562-1	잡	717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축협	
9	"	569-2	답	1,305	14	대구달서구장기동814-1 장기파랑새마을 503동 1203호	성태원			
10	"	562-9	잡	12	12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1	"	562-8	대	352	24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2	"	569-3	답	3,661	16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최덕산			
13	"	562-2	잡	757	65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28-8	김귀행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사과 농협	
14	"	567	답	248	248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경주최씨덕 산정중중			
15	"	562-3	대	241	20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104호(소 만주공아파트)	정홍자			
16	"	566	대	598	5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 (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근저당	거창 농협	
17	"	562-6	대	522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 (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18	"	566-4	답	205	18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 (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19	"	562-4	대	175	29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2-4	차일웅			
20	"	562-7	대	665	113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14-9	김중렬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농협	
21	"	566-6	답	333	5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4	윤동문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3-19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9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9호선)	거창	상림	소로	3	19	90.0	6.0	584	상림리 617-1 ~ 상림리 544-2	경상남도211호 '85.12.28.	2019. 3.~ 2020. 6.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1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4,412	584					
1	상림리	617-1	전	40	40		거창군			
2	상림리	616-1	도	39	39	거창읍 상림리 452 동명아파트 201	김수봉 외15인			
3	상림리	509	도	13,237	94		(국)건설 교통부			
4	상림리	540-2	답	46	46	거창읍 상림리 202-13	권혁정			
5	상림리	553-1	도	92	70	거창읍 동변리 359	현한기 외7인			
6	상림리	540-3	답	25	25	남상면 월평리 1074	김영환			
7	상림리	541-1	답	66	66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403호	김무선			
8	상림리	552-6	대	192	3	거창읍 강변로 19-1	정금연52			
9	상림리	552-9	대	105	100		거창군			
10	상림리	552-2	대	236	55	거창읍 상림리 546-2	이도성 외1인			
11	상림리	546-2	대	237	15	거창읍 상림리 546-2	이도성			
12	상림리	544-2	답	97	31	거창읍 강변로 1길 13-9 3층	고석범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6), FAX(055-940-3579), E-mail : kmj1234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창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25.(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9. 3. 11.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고제 용초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제 용초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고제 용초진입로 확포장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아스콘덧씌우기 A=17.0a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일원(붙임참조)
- 나. 지장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3. 12. ~ 2019. 3. 27.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 련 번 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읍,면	리,동	본번	대 장 상	현 실 상	대 장 상	편 입 면 적	주 소(납세)	성명	
1	거창	고제	봉산	1421-35	임	임	6	3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20, 208동 1103호(장기동 청송마을)	신중진
2	거창	고제	봉산	1422-2	도	도	13	13		박영춘
3	거창	고제	봉산	1423-6	대	대	294	10	고제면 용초길 119-3	최용선
4	거창	고제	봉산	1429-6	대	대	365	24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19,101동 908호	신용현
5	거창	고제	봉산	1428	대	대	764	13	고제면 용초길 104	박종진
6	거창	고제	봉산	1429-3	대	대	410	10	고제면 용초길 110	정동원
7	거창	고제	봉산	1427-3	전	전	119	16	고제면 용초길 74-2	강영순
8	거창	고제	봉산	1427-14	대	대	382	382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92,111동1202호 (가양동,아침마을 아파트)	신원재

『군도12호선(엄대마을)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2호선(엄대마을)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군도12호선(엄대마을) 정비공사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7공구) L=272.0m, 전석쌓기(H=0.5~4.7m, A=782.6㎡)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원(붙임참조)
- 나. 지장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3. 12. ~ 2019. 3. 27.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같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번호	위치			지번	지목		m ²)		소유자	
	군,면	리	본번	대장상	현실상	대장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거창	마리	대동	1049-3	답	답	230	15	거창군마리면엄대1길164 (거창군마리면엄대1길164)	이사문
2	거창	마리	대동	1295	답	답	5,466	259	거창군마리면엄대2길22 (거창군마리면엄대2길22)	최정술
3	거창	마리	대동	1336	답	답	5,066	31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 164-4	김재수
4	거창	마리	대동	1348-1	답	답	2,161	22	거창읍김천리99-1김천주공아파트 105동1004호 (거창군거창읍중앙로43)	하정숙
5	거창	마리	대동	1348-2	답	답	1,433	48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164-3	이순달
6	거창	마리	대동	1348-4	답	답	648	44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164-3	이순달
7	거창	마리	대동	1346-5	답	답	3,070	29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164-3	이순달
8	거창	마리	대동	1606-1	답	답	354	84	거창군마리면대동리1374 (거창군마리면엄대1길140)	최종길
9	거창	마리	대동	260-1	임	임	33,223	177	거창군마리면대동리1380 (거창군마리면엄대2길22)	최정술
10	거창	마리	대동	1625-2	도	도	165	5		최석두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수승대관광지 여름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텐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의 야영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중 ‘일반텐트(노지) 이용료’ 규정 삭제

-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나.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별지 제2호 서식)

4. 예고기간 : 2019. 3. 14. ~ 4. 4.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2, 문화관광과(수승대담당)

- 전화번호 : 055) 940-8530 / FAX : 055) 940-854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연월일	2019. .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일반텐트(노지)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의 야영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나.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별지 제2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3) 비용추계서 :

4) 성별영향분석 : 분석의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 중 “일반텐트(노지)”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비고
소형차	500	200	5,000	
대형차	1,000	400	10,000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삭제> ※ '일반텐트(노지) 이용료' 규정 삭제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5,000	6,000	7,000
단체	4,000	5,000	6,000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시간	이용료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별지 제2호서식」

~~야영장 이용권 서식~~

<p>야영장 이용권 원본</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p>	<p>야영장 이용권 영수증</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	---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삭제> ※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

야영장 데크 이용권 서식

<p>야영장 데크 이용권 원본</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p>	<p>야영장 데크 이용권 영수증</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	--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오토캠핑장 이용권 서식

<p>오토캠핑장 이용권 원본</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p>	<p>오토캠핑장 이용권 영수증</p> <p>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_____ 원 발 행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	---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8. 12. 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479호, 2018.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18)(개정 2005.1.15)(개정 2007. 5. 25)(개정 2008.1.14)(개정 2009.3.18)(조 전 부개정 2013.12.31. 2015.6.10.2018.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3.18)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을 포함)을 말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3.18. 호 이동 및 개정 2015.6.10.)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신설 2013.6.12. 호이동 및 개정 2015.6.10.) (조이동 등2018.12.26)

제3조(위치) 수승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5.6.10.조이동 등2018.12.26.)

제3조 제3조삭제<2018.12.26.>

제5조 삭제<2013.12.31.>

제6조 삭제<2013.12.31.>

제4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2013.12.31. 2015.6.10.)

② 축제극장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12.31. 2015.6.10.)

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12.31)

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1997. 6. 12)(개정 2009.3.18 2013.12.31)

⑤ (항삭제 2015.6.10.)

⑥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3.12.31) <조이동2018.12.26)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조 신설 2015.6.10.조이동 등2018.12.26)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항신설2018.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 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항신설2018.12.26)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개정 2007. 5. 25.조이동 등 2018.12.2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개정 2013.6.12 개정 2015.6.10.)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개정 2013.6.12)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3.6.12.2018.12.26)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개정 2009.3.18 개정 2013.6.12.2018.12.26)
5. 천체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2018.12.26)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09.3.18)(개정 2013.6.12)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제8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3.18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조이동2018.12.26)

제9조(수입금의 사용) 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3.18 2013.12.31)

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중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제10조(준용)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2018.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 12. 11 조례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1. 10 조례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6. 12 조례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9. 20 조례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7. 18 조례16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3호와 별표2중의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3. 5. 1 조례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5 조례 제 1729호)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5. 25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3.18,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6.12.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1.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6.1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79호 개정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